

2020

1

# 가정상담

• 통권 437호 •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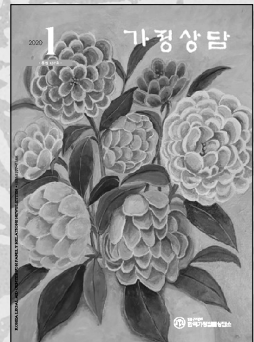


상담소는 2020년 1월 2일 8층 대강의실에서 사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31면)



2019년 12월 17일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21주기를 맞아, 본소에서 조출한 추모의 시간을 가진 후  
곽배희 소장 등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였다. (관련기사 31면)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화양연화〉

- 4 • 새 해 메시지
- 6 • 특집 | 201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2 • 특별기고 | 영국 이혼법의 시사점
- 21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㉑
- 24 • 가정폭력상담실
- 28 • 인터넷 상담
- 29 • 좋은 책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 30 • 결혼과 인생(203) 만화일기  
새해에는... \_ 장차현실
- 31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 34 •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 36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 새해 메시지



대한민국 모든 가정과 가족 구성원을 위해

법률구조 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들은 언제나 다사다난하여 회한을 남기고, 새해 다가오는 시간에 기대와 희망을 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성문제연구원의 방 한 칸을 빌려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가정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복리를 누리도록 도와 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올해 창립 64주년의 해를 맞이하지만 어느 한 순간도 마냥 평탄한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은 유난히 엄혹했던 해로 길이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정상담>에서 상담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 호에 해외지부와 국내지부 창설에 관한 부분을 연재하고 보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됩니다.

지난 <가정상담> 11월호를 통해 ‘전국지부 소장 모임’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상담소 설립자인 이태영 선생님은 법률구조 사업의 전국적 실시를 위해 각 지역의 뜻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지부설립을 시작했으며 이는 1980년대 중반에 들어 본격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부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각 지역사회에서 법률구조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왔습니다. 물론 그 때까지 우리 사회에 법률구조라는 어휘 자체가 생소했고 이러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도 없었습니다. 그저 법을 모르고 돈이 없어 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도 제대로 찾지 못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소외계층, 약자 등 빈민하는 이웃을 위해 상담소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지역사회에 법률구조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그 후 법적인 뒷받침을 바탕으로 법률구조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상담소는 법률구조법 제정에 앞장섰고 1987년 이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 법률구조법이 제정된 이후 현 체제의 본부와 지부 관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상담소는 지금의 본부와 지부 관계를 법적으로 바르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모색을 시도해 왔으나 결국은 지부관리를 위한 조직, 예산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도 상담소가 민간 단체로서 법률구조 사업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상담소의 현 본부와 지부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상담소에서는 현재와 같은 본부와 지부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도달했고 법무부에서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지난해를 기점으로 더 이상 현 본·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아픈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담소에서는 상담소 이사 및 백인변호사단 변호사, 법조계 등의 인사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 자문위원들로부터 개별자문 10회, 전체자문회의 2회 등과 지부위원회 2회, 지부 소장 개별면담 등을 진행하였으며 그 후 내부논의를 거쳐 지난 2019년 10월 25일 전국지부 소장 모임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자로 본부와 지부 관계를 해소할 수밖에 없음을 전하고 각 지부 소장들의 이해를 구한 바 있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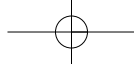
니다. 이어 2019년 11월 21일 정기 후기 이사회에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하였고, 당일 오후 지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부 규정 제13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자로 전국지부에 대한 인증을 일괄 취소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참으로 뼈아픈 결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각 지역사회에서 법률구조 사업이 잠시라도 위축되어 도움이 절실한 가정과 가족구성원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는 점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상담소가 할 일은 하루라도 빨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합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담소의 64년 역사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며 온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닦아 놓은 길에 편안하게 나섰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법률구조 사업 또한 상담소가 최초로 시도를 한 것이며 이제 또 이를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법률구조 사업에 몸담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온 분들과 긴밀한 만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도 이제까지와 같이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으로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복리를 지키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구조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고뇌와 번민은 지난해와 함께 흘러보내고 새로 맞이하는 해에는 모두의 진심과 헌신이 올바른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상담소에 깊은 신뢰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상담소 64주년의 해에도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년 총결산

### 1월

- 1일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재지정
- 2일 시무식
- 8-10일 교육부 교원직무연수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 18일 전국지부 신년워크숍
- 22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수영 교수 본소 방문 및 환담/  
곽배희 소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강서지역자활센터 가족법 및 신용회복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23일 한국미혼모자원네트워크와  
금태섭·김종민·백혜련 의원실 공동주최  
'아동인권으로 바라 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참석 및 토론표발표/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4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상담 초기에 조정되기 쉬운 갈등의 예' /김병후 원장
- 28일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정춘숙·송희경·표창원 의원실 공동주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강화방안 토론회' 참석/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동국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 임상실습

### 2월

- 18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업무협업  
간담회/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 20일 이레상담교육원 본소 기관방문/  
최수진·천다라 상담위원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부설 서울시노숙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용회복상담/전규선 상담위원
- 21일 2019년도 상반기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및  
직원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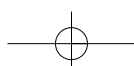


- 25일 법무부 인권구조과 김종현 과장 및 최현태 사무관  
면담/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 2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 양육비이행사례  
간담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7일 2019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
- 28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관계의 기술' /  
김병후 원장

민음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본소 도서관에 자료 기증 (약 2,000권)

본부 총 상담 6,680 건

본부 총 상담 6,613 건





### 3월

- 7일 강서지역자활센터 가족법 및 신용회복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11일 본소, 과천시여성비전센터와  
여성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2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한명애 신임 관장 및  
박은혜 상담원 본소 본소 방문, 미성년후견인 관련  
협력방안 및 법개정방향 논의/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최수진 상담위원,  
김민선 변호사
- 20일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순회상담/조은경 상담위원
- 21일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연수회 참석/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2일 대법원예산담당관실 김남훈 사무관, 김종인 행정관 및  
한국조세연구원 박한준 센터장,  
장광남 전문연구원 등과 소송구조 현황에 관한  
간담회/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아동보호·가정보호재판 법관연수 강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3-24일 제47회 나,너 그리고 우리 행복찾기 부부캠프/  
차연실·박상진 상담위원, 이민정 재무회계과



- 25일 지부관련 간담회/곽배희 소장, 조대연 이사,  
임재연 이사, 최문원 감사, 정미화 변호사,  
천정환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가정위탁 지원 전문상담원 교육/김민선 변호사
- 26일 서울가정법원 방문 및 김용대 신임 법원장과  
협력관계 등 의견교환/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7일 2019년도 정기총회  
2019년 지부위원회/차명희 이사장, 곽배희 소장,  
김명순 이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영등포 보현의 집 소속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및  
상담/전규선 상담위원

- 28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과 긍정적인 감정' /김병후 원장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권역 정기회의 참석/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9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조은경·천다라 상담위원

본부 총 상담 6,515 건

### 4월

-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자녀 양육비 이행을 위한 파탄주의 이혼법 도입  
연구 자문회의'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3일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순회상담/복미영 상담위원
- 4일 청소년대상 가정폭력예방 법교육/차연실 상담위원
- 5일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전무성 경위,  
이영김 경장과 가정폭력업무 협력방안 논의/  
곽배희 소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 5-11일 여의도 봄꽃축제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법교육 실시



- 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  
'비혼가족 차별개선 관련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 참석/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7일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순회상담/복미영 상담위원
- 22일 직원재교육 '국제가족관계등록실무' /  
서장웅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 24일 강서지역자활센터 가족법 및 신용회복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25일 본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참석/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권리' /  
김병후 원장
- 26일 가족법학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9일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30일 법무부 주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  
위원회' 위원으로 제1회 위원회 참석/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2일 지부 관련 자문회의/차명희 이사장, 곽배희 소장,  
김명순 이사, 조대연 변호사, 박영립 변호사,  
정미화 변호사, 천정환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 23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갈등' /김병후 원장
- 24일 서울가정법원 · 한국가족법학회공동주최  
학술회의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7일 본소,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에서  
가정위탁유공자 장관표창 수상

본부 총 상담 6,495 건

## 5월

- 1일 온누리호스피스 가족법교육/김진영 상담위원
- 2일 고양축협농협주부대학 가족법교육/조은경 상담위원
- 7일 현대 HCN 방송  
'박해일의 아직 전하지 않은 리포트' 출연,  
가정폭력에 대한 논의/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9일 EBS 라디오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 출연,  
상담소 소개 및 사업 홍보/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13일 서울시 노숙인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에서  
신용회복상담 및 교육, 가족법 개정 서명운동 실시



-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신임 학대예방경찰관 교육/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순회상담/최수진 상담위원
- 17일 본소 방문한 김용담 전 대법관과 오찬 및  
상담소 지부문제 논의/곽배희 소장
- 한국가족법학회 · 서울가정법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자 직무교육/  
복미영 상담위원

- 28일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9일 송의여자중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권지연 상담위원
- 30일 본소, 서울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협약체결
- 서울시일자리지원센터 노숙인 신용회복교육 및 상담/  
전규선 상담위원
- 31일 이화여자대학교 개교 133주년 기념식 및 총장 초청  
오찬 참석/곽배희 소장

본부 총 상담 6,654 건

## 6월

- 5일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순회상담/조은경 상담위원
- 10일 헌법재판소 정책자문위원회 참석/곽배희 소장
- 12일 고 이희호 선생 빈소 조문/차명희 이사장,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이레상담교육원 법률구조체형교육/조은경 상담위원
- 13일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양육비이행 법률지원사업 관련  
실무자 협의회/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최수진·유혜경 상담위원, 김민선·황현정 변호사  
 애란원 한부모가족 교육 및 상담/천다라 상담위원  
 17일 고명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본소 방문 및 논의/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18일 MBC '백분토론' 출연, 이혼의 기준에 대한 토론/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19일 기획재정부 주관 2020년도 수치차 기관 예산안  
 설명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현옥 재무회계과장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순회상담/조은경 상담위원  
 영등포 보현의 집 소속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및  
 상담/전규선 상담위원  
 21일 본소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와 법제 개선'  
 심포지엄 개최



- 26일 임시이사회  
 27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관계를 교정하고  
 개인을 지키는 부정적 감정'/김병후 원장  
 28일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와 법학연구소 회복적사법센터  
 주최 학술세미나 토론 발표/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9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혼 관련 법교육/  
 복미영 상담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본부 총 상담 6,304 건

## 7월

- 2일 영등포구청 상반기 가정폭력관련시설 현장점검  
 3일 신연중학교 법률구조체험교육/조은경·천다라 상담위원



-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순회상담/최수진 상담위원  
 4일 강서지역자활센터 가족법 및 신용회복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20-22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조은경·천다라 상담위원  
 22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가족법제개정위원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5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분노의 남용'/김병후 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동국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본부 총 상담 7,361 건

## 8월

- 7일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순회상담/김진영 상담위원  
 8일 애란원 한부모가족법교육/유혜경·권지연 상담위원  
 13일 애란한가족네트워크와 간담회/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21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비혼·임신·출산상담 관련  
 법과 제도 교육/조은경 상담위원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순회상담/최수진 상담위원  
 희망가족폭력상담소 법률구조체험교육/  
 천다라 상담위원  
 23일 본소 윤후정 이사  
 '이화여대 법과대학 70년·법학전문대학원 19주년  
 기념행사'에서 특별공로패 수상 및  
 곽배희 소장 자랑스러운 이화법대인상 수상



- 27일 강서지역자활센터 가족법 및 신용회복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28일 여수시가족센터 이혼전후 상담 법률교육/  
 복미영 상담위원



29일 사각지대 위기 임신·출산 지원 사업 사례발표회/  
조은경 상담위원

동국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본부 총 상담 6,258 건

## 9월

3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갈클리닉 II에서  
'가족법개정사' 주제 강의/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4일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순회상담/복미영 상담위원

6일 자원봉사자 재교육

6-7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조은경·천다라 상담위원



10일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에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17일 서대문구 사회복지박람회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 실시

18일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순회상담/김진영 상담위원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팀과의 인터뷰/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20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예방 협약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자 회의 실시/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부설 서울시노숙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용회복상담/전규선 상담위원

24일 인왕중학교 1학년 법률구조체험교육/  
조은경·천다라 상담위원

25일 이례상담교육원 법률구조체험교육/  
조은경·천다라 상담위원  
영등포 보현의 집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및  
상담/전규선 상담위원

26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조정되지 못하는 핵심 상처' /김병후 원장

법무부 검찰담당관실 주관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 참석/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강서지역자활센터 가족법 및 신용회복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28일 관악구 다문화가족박람회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 실시

본부 총 상담 6,403 건

## 10월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  
'다양한 가족포용을 위한 제도화기반 마련 연구'  
자문회의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일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순회상담/조은경 상담위원

10일 애란원 한부모가족법교육/조은경 상담위원

11일 본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예방 및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례상담교육원 가족법 및 법률구조사례 교육/  
김진영·유혜경 상담위원

본소 임직원 대상 부패 및 폭력예방교육/  
김진영 상담위원

18일 창립 63주년 기념 심포지엄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최



21일 새희망교육지원센터 출장상담/전규선 상담위원

23일 희망가정폭력상담센터 가족법 및 법률구조사례 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24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혼전후 상담사업센터  
가족상담전문가 대상 강의/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5일 희망가정폭력상담센터 가족법 및 법률구조사례 교육/  
최수진·천다라 상담위원

이례상담교육원 가족법 및 법률구조사례 교육/

천다라 상담위원

28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 개발연구 관련 전문가자문회의 참석/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30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및 실무종사자 교육 및 상담 실시/전규선 상담위원

31일 일본 朝日新聞사와 이혼법 개정 등 가족법개정운동 관련 인터뷰/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본부 총 상담 6,211 건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부부갈등에 관여하는 부모와의 관계' /김병후 원장

22일 인천가정법원 · 인하대학교 · 인천일보 공동주최 '건강한 이혼과 자녀양육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회에서 토론발표/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8일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법령의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토론발표/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9일 가정폭력전문가 간담회/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 11월

본부 총 상담 5,821 건

1일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 관련 가정위탁 법률 · 정책 개선회의 참석/최수진 상담위원 · 김민선 변호사

2-3일 제48회 나,너 그리고 우리 행복찾기 부부캠프/ 차연실 · 박상진 상담위원



6일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순회상담/복미영 상담위원

7일 조정위원 연수회 참석/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 '다양한 가족의 포용을 위한 제도적 과제 전문가 좌담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13일 전화상담 자원봉사자 모임

14일 법무부 주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자 직무교육/ 복미영 상담위원

19일 미혼모지원네트워크 · 김상희 의원실 ·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공동주최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토론발표/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일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순회상담/김진영 상담위원

21일 2019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

## 12월

4일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순회상담/최수진 상담위원

양육비이행관리원 2019년 현장기동반 결과보고회/ 유혜경 상담위원

6일 경기광역자활센터 회의/복미영 상담위원

7일 라오니캠프/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차연실 · 박상진 상담위원

10일 휘경여고 가정폭력예방교육/최수진 · 유혜경 상담위원

13일 가족법학회 토론/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17일 이태영선생님 21주기 추모식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워크숍/ 조은경 상담위원 · 김미연 재무회계과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실무자 간담회/조은경 상담위원

교원직무연수 설명회/박상진 상담위원

18일 희망가정폭력상담센터 가족법특강/복미영 상담위원

19일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권역 정기회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0일 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6일 강서지역자활센터 가족법 및 신용회복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31일 종무식

본부 총 상담 5,511건

최정아 사서 | 편집부





## 영국 이혼법의 시사점

지난 2015년 대법원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면서도 그 허용 가능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현행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 규정만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의 해결이나 파탄주의 채택 등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을 포함하여 파탄주의로의 전환은 이혼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우리나라 보다 앞서 파탄주의 도입을 고민하고 채택한 나라들의 이혼법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 내지 사회적 의식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이혼법제의 도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상담」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서너 차례에 걸쳐 서구 등의 이혼법제를 소개하고자 하며, 이번 호에서는 개혁적인 이혼법안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입법화 되지 못한 영국의 1996년 가족법 중 이혼법안을 중심으로 하여 영국의 이혼법을 간략히 개관해 보기로 한다.

### 1. 서론

영국은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이혼문제는 교회재판소(ecclesiastical courts) 관할 하에 있었고,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혼인무효나 별거 등과 같은 불완전한 이혼만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자연법사상 및 인본주의사상의 등장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 등으로 근대적인 이혼법이 요구됨에 따라 1857년에 간통 등 전통적인 사유만을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유책주의에 충실한 특징을 가진 이혼법을 입법화하였다. 이후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변화와 이혼율의 증가 및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으로 이혼법 개정에 대한 압력이 거세어짐에 따라 1969년에 파탄주의 이혼법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였다. 이하에서 영국의 1969년 이혼법과 현행법인 1973년 이혼법 그리고 1996년 이혼법안을 검토해 본다.

### 2. 1969년 이혼법

#### (The Divorce Reform Act 1969)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법률구조제도의 시행과 이혼한 배우자(특히 유책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의 변화로 수십 년 동안 이혼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혼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어느 당사자라도 이혼청구가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1)</sup>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66년에 이혼에 관한 2개의 중요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하나는 이혼법의 개혁과 혼인의 파탄에 대한 원칙 수립을 위하여 1960년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임명한 단체(Archbishop of Canterbury's Group)에서 출판한 'Putting Asunder—A Divorce Law for Contemporary Society'로 동 보고서에서는 혼인 파탄이 이혼의 유일한 사유가 되어야 하며(breakdown

1) Nigel Lowe and Gillian Douglas, Bromley's Family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213.

theory), 법원은 당사자에 의해 주장된 사실과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사안들을 상세하게 심문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sup>

위 보고서는 영국 대법관인 Gardiner경에 의해 법률위원회(The Law Commission)에 추천되었고, 법률위원회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이혼사유 개혁 : 선택의 장(Reform of the Grounds of Divorce : the Field of Choice)”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동 보고서에서는 좋은 이혼법의 출발점은 혼인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것이며, 다만 유감스럽게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에는 공허한 법적 껍데기는 파괴되어야 하나 그 경우에도 최대한 공정하고 비통함과 고통, 굴욕감을 최소화시키는데 있다고 하였다.<sup>3)</sup> 이 보고서에서는 혼인 파탄이 법원의 상세한 청문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며, 혼인파탄의 근거로 별거기간을 도입 할 것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할 경우에는 별거기간을 단축 할 것을 제안하였다.<sup>4)</sup>

대주교 단체와 법률위원회가 제안한 의견에 대한 토론과 타협을 거쳐 이혼개혁법이 1969년 통과되었다. 동법의 시행으로 과거의 모든 이혼 사유들은 폐지되었고,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가 유일한 이혼 사유로(irretrievable breakdown the sole ground for divorce) 대체되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혼인파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에서 규정한 5개의 사실(facts) 중 하나 이상의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69년 이혼개혁법은 1971년부터 시행되다가 혼인 사건절차 및 재산법(Matrimonial Proceeding and Property Act 1970) 등과 함께 1973년 이혼법(Matrimo-

nial Causes Act 1973)으로 흡수 · 개정되었다.<sup>5)</sup>

### 3. 현행 이혼법 : 1973년 이혼법

#### (The Matrimonial Causes Act 1973)

##### 가. 1973년 이혼법상 이혼원인

1973년 이혼법 제1조 제1항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혼인 파탄을 유일한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회복할 수 없는 혼인파탄’이 이혼허용의 사유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 혼인파탄은 동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5개의 개별 혼인 파탄 사실(facts) 중 하나 이상을 증명해야 성립될 수 있고 만일 이들 사실 중 한 개라도 증명하지 못하면 비록 혼인이 파탄되었더라도 법원은 이혼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5개의 사실은 다음과 같다.

- (1) 피청구인이 간통을 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동거를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것<sup>6)</sup> -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간통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간통이 너무나 모욕적이고 청구인에게 상처를 주어 그 이후 피청구인과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청구인이 법원을 설득시키는 경우”<sup>7)</sup>에 이르러야 한다.
- (2) 피청구인의 행동 방식으로 인해,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동거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sup>8)</sup> -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였다는 점과 피청구인의 행동으로 인해 증명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함께 살아

2) Law Commission, “Facing the Future—A Discussion Paper on the Ground for Divorce”(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88), p.3, para. 2.2. [https://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acing-the-future-a-discussion-paper-on-the-ground-for-divorce](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acing-the-future-a-discussion-paper-on-the-ground-for-divorce). (최종방문일 2019.12.10).

3) Law Commission(주2), p.3-4, para. 2.3.

4) Lowe and Douglas (주1), p.213.

5) Brenda Hale, David Pearl, Elizabeth J. Cooke and Philip D.Bates, The Family, Law & Society(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149. 참조; Lowe and Douglas (주1), p.214.

6) Matrimonial Causes Act 1973 s.1(2)(a).

7) Lord Stow Hill, Hansard, HL Vol.303, col.296 (June 30, 1969); Judith Masson, Rebecca Bailey-Harris and Rebecca Probert, Cretney Principles of Family Law (Sweet&Maxwell, 2008), pp.291-292에서 재인용.

8) Matrimonial Causes Act 1973 s.1(2)(b).

갈 것으로는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한다.<sup>9)</sup>

- (3) 이혼청구 직전까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유기하였을 것<sup>10)</sup> -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별거라는 사실과 배우자 유기의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sup>11)</sup>
- (4) 이혼청구 직전까지 2년 이상 계속 별거하였고, 피청구인이 이혼 승인판결에 동의할 것<sup>12)</sup> - 이 규정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동의에 의한 이혼을 도입한 것이다. 1973년 이혼법은 배우자들이 같은 가정에서 서로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배우자들은 따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sup>13)</sup> 이 조항에 따른 이혼은 피청구인도 이혼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의해야 하므로 승인된 이혼판결의 효력을 피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sup>14)</sup>
- (5) 이혼청구 직전까지 5년 이상 계속 별거하고 있을 것<sup>15)</sup> - 이 조항은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이혼(divorce without consent)을 규정한 것으로 혼인의무 위반을 하지 않고 또한 혼인의 파탄에 대해 어떠한 책임질 일을 한 적도 없는 배우자의 의사와는 반대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 조항이다.<sup>16)</sup> 다만 5년의 별거가 확인되더라도 혼인의 해소가 피청구인에게 중대한 재정적 시련 또는 다른 곤란을 초래한다면 피청구인은 법원의 이혼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sup>17)</sup>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단순히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

도로 파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5개 사실들을 일반적으로 이혼사유로 보고 있다.

1973년 이혼법 제1조 제4항에서는 위의 제1조 제2항의 5가지 개별 혼인파탄 사실(사유)이 증명되었다면 법원은 이혼 확정판결을 승인해야 하지만, “만일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모든 증거로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심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이지만,<sup>18)</sup> 이혼소송에서 청구인은 위의 5가지 사실 중의 하나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피청구인은 그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sup>19)</sup> 그러나 청구인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한 피청구인이 이를 반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sup>20)</sup>

## 나. 이혼판결 절차

### (1) 특별절차(The special procedure)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부부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해 2년 동안의 별거 및 동의라는 사실을 근거로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절차(The special procedure)’<sup>21)</sup>가 1973년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1977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무항변으로 처리되는 모든 이혼청구 사건에 이

9) Masson, Bailey-Harris and Probert (주7), p.295.

10) Matrimonial Causes Act 1973 s.1(2)(c).

11) Masson, Bailey-Harris and Probert (주7), p.295.

12) Matrimonial Causes Act 1973 s.1(2)(d).

13) Matrimonial Causes Act 1973 s.2(6).

14) Matrimonial Causes Act 1973 s.2(7).

15) Matrimonial Causes Act 1973 s.1(2)(e).

16) Lowe and Douglas (주1), p.221.

17) Matrimonial Causes Act 1973 s.5.

18) Matrimonial Causes Act 1973 s.1(3).

19) Lowe and Douglas (주1), p.214.

20) J. Burgoyne, R. Ormrod and M. Richards, Divorce Matters (Hamondsworth: penguin, 1987), pp.57-58; Masson, Bailey-Harris and Probert (주7), p.291에서 재인용.

21) Family Procedure Rules 2010 Part 7.



‘특별절차’가 적용되어 혼인이 회복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인 조사를 배제시키고 있다.

이러한 특별절차는 무항변의 이혼소송에만 적용되는데, 이혼의 항변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때로는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 대부분이 이 특별절차를 이용하고 있다.<sup>22)</sup> 특별절차의 전체 과정에서 사법부의 유일한 기능은 지방법원 판사가 이혼 효력을 발생시키는 증명서를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 절차는 행정적인 것이며 이혼판결을 공개된 법정에서 선언하는 것 역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sup>23)</sup>

## (2) 이혼판결(Decrees)

이혼판결(Decrees)은 이혼 가판결(decree nisi)과 그 이후 이루어지는 이혼 확정판결(decree absolute)의 두 단계로 진행된다.<sup>24)</sup> 모든 이혼판결은 먼저 가판결(decree nisi)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혼인을 법적으로 종결시키지는 못한다. 양 배우자 간에 이전에 존재하였던 혼인의 법적인 상태를 종료시키는 이혼판결(decree of divorce)은 확정판결(decree absolute)만을 통해 가능하다.<sup>25)</sup>

이혼 청구인은 이혼 가판결이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언제든지 이혼 확정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법원이 더 짧은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up>26)</sup> 피청구인의 신청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적인 사항들이 미해결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이혼 확정판결 신청은 거부될 수

있다.<sup>27)</sup> 이혼판결에 있어 두 단계의 절차를 만든 목적은 원래 이혼신청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청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혼 가판결과 이혼 확정판결 사이의 기간은 혼인종료에 따른 금전적인 결과 등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sup>28)</sup>

## 다. 피청구인에 대한 보호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피청구인은 1973년 이혼법 제 5조에 따라 이혼 가판결의 수용을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동법 제10조에 따라 이혼 확정판결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 (1) 이혼 가판결의 수용거부

이혼 청구인이 5년간의 별거에 근거하여 이혼을 신청한 경우 혼인의 해소가 중대한 재정적인 시련이나 또 다른 곤란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혼인을 파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잘못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이혼 가판결의 승인을 반대할 수 있다.<sup>29)</sup> 이러한 조항은 5년 동안의 별거 사실이 “선량한 배우자”의 의사와는 반대로 이들 배우자와 이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도입된 것이다.<sup>30)</sup> 중대한 재정적인 시련에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더라면 피청구인이 확보할 수도 있었던 어떤 혜택의 상실을 포함한다.<sup>31)</sup> 이 조항은 “심각한 시련에 봉착할 수도 있는 소수 집단을 위해서는 중요한 보호장치”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1996년 이혼법안에서도 법률위원회는 이 조항을 법에 존치하도록 권고하였다.<sup>32)</sup>

22) Lowe and Douglas (주1), p.227; Masson, Bailey-Harris and Probert (주7), pp.288- 292.

23) Masson, Bailey-Harris and Probert (주7), p.288.

24) Lowe and Douglas (주1), p.228.

25) Masson, Bailey-Harris and Probert (주7), p.288.

26) Matrimonial Causes Act 1973 s.1(5).

27) Lowe and Douglas (주1), p.228.

28) Masson, Bailey-Harris and Probert (주7), p.289.

29) Matrimonial Causes Act 1973 s.5.

30) Lowe and Douglas (주1), p.222.

31) Matrimonial Causes Act 1973 s.5(3).

32) Law Commission, “Family Law the Ground for Divorce.”(Report No.192) para.5.75 (London: HMOS, 1990),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28985/0636.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28985/0636.pdf) (최종방문일 2019.12.20).

## (2) 이혼 확정판결의 연기

2년 또는 5년의 별거를 근거로 이혼 가판결이 허용된 경우 피청구인은 이혼 가판결이 이혼 확정판결로 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을 위한 재정적인 준비 의무가 없다는 점 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위해 마련한 재정적인 준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거나 또는 피청구인의 상황에서 마련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up>33)</sup>

이혼 확정판결의 연기는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대응책으로 만일 이혼 확정판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법원이 청구인으로부터 만족스러운 약속을 확보하여 법원이 승인하는 것과 동일한 재정적인 제공을 청구인이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혼 확정판결을 내릴 수 있다.<sup>34)</sup>

## 4. 1996년 가족법(The Family Law Act 1996) 중 이혼법안 제정 경위의 폐기

### 가. 1973년 이혼법에 대한 비판

1973년 이혼법은 회복할 수 없는 혼인 파탄을 유일한 이혼사유로 규정하면서도 5개의 개별 사실 중 적어도 하나를 증명하도록 하여 파탄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유책주의가 혼합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혼인 파탄에 대해 무책주의 개념으로 프레임이 변화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한 5개의 개별 사실들 중 세 가지는 유책주의에 기반을 둔 점과 많은 사람들이 이혼 청구의 근거로서 계속적으로 유책조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1973년 이혼법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혼율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 1969년 이혼법이 이혼을 너무 쉽게 만들었던 것에 원인이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 1966년에 법률위원회 제안했던 법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sup>35)</sup> 이혼법에 대한 개혁 논의가 제기되었다.

### 나. 법률위원회가 제시한 방안

법률위원회는 이혼법의 개혁을 위해 1988년에 'Facing the Future—A Discussion Paper on the Ground for Divorce Law'를 발표하고 이어 1990년에 'The Ground for Divorce Law'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1) 법률위원회의 비판내용

법률위원회에서는 'The Ground for Divorce Law' 보고서에서 1973년 이혼법에 대해 ① 혼란스럽고 오해를 일으킨다는 점,<sup>36)</sup> ②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점,<sup>37)</sup> ③ 당사자의 협상 입지를 왜곡한다는 점,<sup>38)</sup> ④ 불필요한 적대감과 고통을 부추긴다는 점,<sup>39)</sup> ⑤ 혼인을 구제하기 위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점,<sup>40)</sup> ⑥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sup>41)</sup>는 점 등을 비판하였다.

33) Matrimonial Causes Act 1973 s.10(2), (3).

34) Matrimonial Causes Act 1973 s.10(4).

35) Law Commission(주2), pp.12-13, para. 3.1, 3.4, 3.5.

36) 이혼사유는 회복할 수 없는 혼인의 파탄이라고 동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유책사유가 이혼 승인판결의 근거가 아님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이 아무리 심각하게 파탄이 되어도 일방 배우자가 세 가지 유책사유를 포함한 다섯 가지 사실들 중 하나를 이혼사유로 적시할 수 없다면 그 파탄이 이혼판결로 귀결되지 못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혼사유들을 과장하도록 조장한다는 점에서 이법이 혼란스럽다고 하였다[Law Commission (주32), p.5, para. 2.8-2.11].

37) 보다 신속하게 이혼 승인판결을 얻기 위해서, 사회·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룹의 사람들은 '2년 동안의 별거 및 이혼판결에 동의'라는 사실을 이혼근거사유로 삼고 있는 데 비해, 수많은 부부들은 이혼하기 전 2년 동안 별도의 가정에서 분리하여 살아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는 덜 만족스러운 유책사유라는 사실을 이혼근거사유로 삼아야만 한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국민들로서는 활용할 수도 없는 세련된 무책주의 베이스를 이혼사유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차별적이고 부당하다고 하였다[Law Commission (주32), p.6, para.2.12-2.14].

38) 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거나 또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일방 당사자는 돈과 자녀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협상에서 더 약하거나 혹은 더 강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이 법은 당사자들의 협상입지를 왜곡시킨다고 하였다[Law Commission(주32), p.7, para.2.15, 2.16].

## (2) 법률위원회가 제안한 이혼제도개혁방안

법률위원회는 이혼법을 추가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개혁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sup>42)</sup>

- ① 법은 구제될 수 있는 혼인은 이를 후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법은 구제될 수 없는 혼인은 곤경, 고통 및 적대감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해체되도록 해야 한다.
- ③ 법은 부부의 가정과 재정 및 자녀들과 관련된 실질적인 이슈들에 대해 가능한 한 우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하고, 또한 부부 상호 간 및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④ 법은 이혼 시점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자녀들이 겪게 될 해악(harm)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가능한 한 자녀들을 위한 부모 책임이 계속적으로 공유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이혼법안은 조정(mediation)을 강조하고 자녀들 및 1989년 아동법(Childten Act 1989)의 근간이 되고 있는 부모책임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법률위원회

는 유책사유에 대한 평가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유책주의 시스템으로의 복귀를 폐기하였다.<sup>43)</sup> 그리고 이혼법을 개정한 다른 국가들이 선호했던 모델은 단순한 별거 기간에 의한 이혼이었지만,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걸쳐 일정한 절차가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이혼이 승인이 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에 양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이혼을 원하는지에 대해 숙고해야 하고 정말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위한 실 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sup>44)</sup>

## 다. 정부의 대응

법률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하여 대법관(The Lord Chancellor)은 이혼법개혁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정부는 1993년과 1995년에 전문가 의견을 수록한 Green Paper와 입법제안을 수록한 White Paper를 발간하고 이혼법 개정에 착수하였다.<sup>45)</sup> 정부안에서는 법률위원회가 권고한 바 있는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수용하였고, 또한 조정

39) 1969년 이혼법의 근본적인 목표는 이혼 승인판결을 얻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 곤경, 모멸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었으나 1973년 법률 시스템은 이혼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여 가능한 한 나쁜 사람으로 부각되도록 조장하였고 당사자들이 대립적인 위치에 있어 불필요한 적대감과 고통을 유발한다고 하였다[Law Commission(주32), p.7, para. 2.16].

40) 이 법에는 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도로 만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으며, 혼인관계를 치유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회복할 수 없는 혼인 파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오히려 관심이 집중되어 혼인관계를 구제하기 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Law Commission (주32), pp.7-8, para. 2.17, 2.18].

41) 만일 이혼 후에도 부모들이 계속 갈등상태에 있게 된다면 자녀들은 부모들의 이혼 후에도 고통을 더 느끼게 될 수 있다. 이 법은 그러한 갈등을 줄여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Law Commission (주32), pp.8-9, para. 2.19, 2.20].

42) Law Commission (주32), p.10, para. 3.1 참조.

43) Law Commission (주32), pp.11-12, para. 3.6-3.9.

44) Law Commission (주32), pp.14-16, para.3.18-3.20. 법률위원회가 제시했었던 이혼절차는 다음과 같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남편이나 아내(또는 양 당사자 모두)가 믿고 있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절차가 시작되고, 각 당사자에게 이혼숙려기간의 목적, 이혼과 별거의 효과, 법원의 권한, 상담·화해·조정 성격과 목적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담긴 팩(pack)이 제공된다. 서약서 제출 후 12주 이내에 법원은 그 진행 상황을 검토할 예비 평가와 양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는 데 조정이 적절한 도움을 주는지 여부도 고려해 본다[Law Commission (주32), pp.26-38]. 서약서 제출 11개월 후 당사자들은 혼인 파탄이 회복될 수 없으므로 이혼명령을 내려 주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들에게는 상담이나 조정 기회가 부여될 수 있고 혼인이 파탄에 이르기 전에 이혼의 현실적 결과들이 이상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법원은 자녀, 금전, 부동산 조정 등과 관련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법원은 이혼신청 1개월 후 이혼명령을 내릴 수 있다[Law Commission (주32), pp.39-43].

45) Lord Chancellor's Department, "Looking to the Future: Mediation and the Ground for Divorce".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72042/2799.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72042/2799.pdf) (최종방문일 2019.12.20)



이 재판보다 더 저렴한 수단이며 화해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보아 조정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였다.

## 라. 1996년 가족법(The Family Law Act 1996)의 주요 내용

‘1996년 가족법’이라는 형태로 입법화된 정부의 이혼법안은 ‘일반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Part I 과 개혁적인 이혼 법률 내용을 규정한 Part II, 그리고 법률 구조에 관련된 Part III로 구성되어있는데, Part I 과 Part III는 시행되었으나 Part II는 새로운 입법의 핵심 내용인 설명회와 조정에 대한 시범운영의 실패, 지나치게 긴 숙려기간 및 유책주의 법제의 완전한 제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결국 발효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 (1) Part I 에 따른 일반 원칙

이 법 제1조에서는 혼인제도의 지지와 함께 파탄된 혼인의 당사자들이 상담이나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혼인의 회복을 위해 마련된 모든 실행 가능한 단계들을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혼인당사자들과 자녀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당사자들과 자녀 간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혼인종료 절차에 불합리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 당사자 일방과 자녀들에 대한 폭력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혼인의 해소 시 필요한 일반원칙으로 규정하였다.<sup>46)</sup>

### (2) Part II 에 따른 이혼절차

Part II에서는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일련의 단계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단계의 내용은 혼인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혼

청구인이 이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 배우자 및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이혼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sup>47)</sup> 동법에서 제안된 주요 이혼법 개혁 내용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시험과 모니터링을 하였는데, 특히 설명회와 조정이 법의 목적을 잘 구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명회와 상담 및 조정에 대한 시험(test)운영이 시도되었다.<sup>48)</sup>

#### ① 설명회

1996년 이혼법안은 이혼을 제기하거나 이를 방어하거나 또는 이혼에 관련된 어떠한 명령을 구하는 부부들은 반드시 먼저 설명회에 참석하도록 규정하였다.<sup>49)</sup> 이 설명회의 목적은 이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혼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해 서로 소통을 하는 데 있다. 여기서 제공되는 정보는 이혼 부부의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며 이혼절차의 시작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sup>50)</sup> 그런데 설명회 시험 운영을 모니터링한 연구 결과에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 자문을 원하였으나 설명회에서는 그러한 자문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이혼을 이미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혼인 상담 및 화해의 시도를 권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설명회 참여자들 중 겨우 7%만이 이혼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답하였고, 오직 23%만이 설명회 참석 후 2년 안에 혼인 상담을 받은 반면 참석자의 73%는 2년 내에 변호사를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sup>51)</sup> 이것은 법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사람들은 상담과 조정이 자신들과 관련이 적다고 생각하고 이혼이 결정되면 변호사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46) 이 중 아동 관련조항은 2014년 아동과 가족법(The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으로 대체되었다.

47) Lowe and Douglas (주1), p.235.

48) Masson, Bailey-Harris and Probert (주7), p.309.

49) Family Law Act 1996 s.8(2).

50) Lowe and Douglas (주1), p.235.

51) Lowe and Douglas (주1), p.236.

## ② 숙려기간과 혼인파탄의 진술서

이혼 신청인이 이혼 설명회에 참석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은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기재한 혼인 파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sup>52)</sup> 진술서 제출을 설명회 참석 후 3개월로 둔 목적은 ‘냉각기(cooling off period)’를 제공하여 당사자들이 화해의 가능성을 찾으려 하기 위한 것이다. 진술서 제출 후 9개월의 숙려기간(period of reflection and consideration)이 진행되며 숙려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혼인이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점이 확인될 수 있다.<sup>53)</sup>

숙려기간 동안 조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두 번째 시험 운영이 시도되었는데 조정을 통해 중재를 받은 사람들은 호의적 반응을 보였으나 고객만족이라는 측면에서는 변호사 조력이 조정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조정이 비용 면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지만 법률 초안 마련 당시에 기대했던 것만큼 조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못한 점에 그 이유가 있다.<sup>54)</sup> 한편 1996년 가족법 중 이혼법안에 따르면 양 당사자들이 화해시도를 위해, 혹은 일방 당사자가 혼인 파탄을 인정하고 법원에 이혼숙려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이혼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은 자동으로 6개월이 연장될 수 있다.<sup>55)</sup>

## ③ 이혼명령

임의 기간의 종료 시점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양 당사자는 이혼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혼의 두 단계인 이혼가판결 및 이혼 확정판결도 폐지되며 이혼명령으로 혼인은 종료된다.<sup>56)</sup> 다만 1973년 이혼법 제5조와 유사한 조항에 따

라 법원은 혼인의 종료자 자신이나 자녀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고통이나 기타 시련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일방배우자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혼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sup>57)</sup> 또한 당사자들의 행위와 자녀의 이익을 포함한 모든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혼인을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방 배우자가 주장하는 경우에도 역시 법원은 이혼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sup>58)</sup>

## (3) PartⅢ에 따른 조정을 위한 법률구조

Part III는 가족 문제 조정을 위한 법률구조에 대하여 규정하며 1988년 법률구조법(Legal Aid Act 1988)에 추가해야 하는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다. 1988년 법률구조법 제27조에서는 조정이 본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누구나 규정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다<sup>59)</sup>고 하면서 조정위원들이 보장해야 하는 사항들로 ① 당사자들은 폭력이나 기타 손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조정에 참여하고, ② 일방 당사자가 폭력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확인되어야 하며, ③ 조정을 통한 화해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④ 각 당사자는 독립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0)</sup>

## 마. 1996년 이혼법안에 대한 평가

1996년 이혼법안은 1973년 이혼법에 규정된 일정 기간 이상의 별거요건도 삭제하여 당사자 일방의 이혼신청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완전한 파탄주의를 표방하였다. 또한 동 법안에 따르면 부부들이 화해

52) Family Law Act 1996 s.6.

53) Family Law Act 1996 s.7(6).

54) Lowe and Douglas (주1), p.237.

55) Family Law Act 1996 s.7.

56) Lowe and Douglas (주1), p.238.

57) Family Law Act 1996 s.10(1).

58) Family Law Act 1996 s.10(2).

59) Legal Aid Act 1988 13B(2).

60) Legal Aid Act 1988 13B(7).

의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혼인 종료의 영향에 대한 합의내용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대기 단계(waiting stage)와 숙려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이혼이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을 경과해야 가능하였다. 이 법에 규정된 이혼숙려기간은 이혼 당사자들과 자녀들을 위해 충분히 숙고할 시간과 상담이나 조정을 받거나 화해를 도출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행법보다 더 나은 이혼법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6년 이혼법안은 이혼과정에 있어 법에서 규정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설명회 시험 운영의 결과 사람들의 욕구나 문제는 달랐고 혼인상담과 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 역량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조정의 시험 운영 결과 역시 이미 사람들이 익숙해진 변호사의 조력이나 협상을 조정으로 쉽게 대체할 수 없었다.<sup>61)</sup>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설명회와 상담, 조정 등을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차별화하여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실시하고 법률 및 심리 상담과 조정이 이혼절차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확대되었다면 법이 통과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상에서 볼 때 1996년 가족법의 이혼법안은 이혼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조정을 통해 혼인 회복 가능성을 검토할 기회를 규정한 점에서 상당히 개혁적인 입법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고통과 적대감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자녀들에 대한 책임 공유를 최우선에 두고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이 도와주어야 할 것을 목표로 한 점에서 기존의 다른 법제와 차별이 된다. 또한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유책주의의 완전한 폐기는 법으로 도덕적 판단을 부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 5. 결론

1996년 법 폐기 이후에도 영국에서 이혼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2015년 10월, 보수당 의원인

Richard Bacon은 무책 이혼 법안(No-Fault Divorce Bill 2015-16)을 제출한 바도 있었다. 이 법안은 현행 이혼 사유에 공동 청구(joint petition) 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동 청구에 의한 모든 이혼 판결은 우선 이혼 가판결이 있어야 하고 특별히 법원에서 정한 기간이 있지 않는 한 12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판결을 확정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여 1996년 이혼법안과 유사한 이혼숙려기간제도를 제안하였으나 회기 만료로 더 이상의 법안 심사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다.<sup>62)</sup>

영국 이혼법은 혼인의 파탄을 유일한 이혼사유로 하면서도 혼인파탄사실을 증명해야만 이혼이 성립할 수 있어 유책주의 요소도 가지고 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이혼도 2년 동안 별거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과거 유책주의 이혼법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5년간의 별거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배우자 일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인정됨으로써 이혼원인의 유·무책이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파탄주의 이혼법의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혼원인에 있어 유책적 요소의 제거 문제는 1996년 이혼법안에서 비로소 구현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상적인 이혼법으로 주목받았던 1996년 이혼법안은 절차의 복잡성과 설명회 및 조정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주요한 규정 대부분이 폐기되었고 현행 이혼법은 여전히 개정요구를 받고 있다. 이혼법제와 관련하여 사회 변화와 국민의식의 정도를 반영하여 좀 더 나은 이혼법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시도해 온 점에서 영국 이혼법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61) Lowe and Douglas (주1), p.239.

62) <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5-16/nofaultdivorce.html> (최종방문일 2019.12.20).

##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 국내외 지부의 설치·확대

## 해외 지부 설치와 확대

상담소가 국내 지부 설치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1966년 무렵부터였으며 해외 지부를 설립할 목표를 갖게 된 것은 25주년에 이르러서였다. 25년 여의 세월 동안 이제 여성과 가정 문제에 관한 한 체계적인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된 만큼 그 수혜 대상을 서울 밖의 지역 또는 나라 밖으로까지 넓힐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데 대한 논의가 4반세기를 기점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

해외,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내에 지부설치를 계획하게 된 것은 이태영 소장이 후원관계 등으로 미국에 왕래하면서 목격한 동포 가정의 문제가 불안정한 이민생활과의 상승작용으로 몇 곱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어 '번민하는 이웃'에서 이웃의 의미가 비단 내 나라 내 땅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상담소가 특히 주목한 것은 미국에 거주하는 60만 동포 중 약 8만을 차지하는, 미군과 국제결혼한 한국 여성의 그늘진 삶이었다. 이들의 이민생활과 결혼생활이 얼마나 비극으로 차 있는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출 것도 없이 이혼율 80%라는 기록적인 통계가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었다.

이 통계는 8만여 명의 국제결혼 여성을 대상으로 미8군 인사처, 숭실대학 박종삼 교수, 8개 미주 총영사관, 미국 대사관, 현지 동포사회 목사 등에게 의뢰하여 1년 6개월에 걸쳐 조사 작성된 것이다.

이 소장이 미국에 방문할 때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상담을 원하는 이들이 줄을 서곤 했다. 대부분은 국제결혼 한 동포여성들로서 이들 가운데에는 미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팔다리가 부러지고 정신착란을 일으키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83년 1월 25일 시카고에서 국제결혼과 이혼을 거쳐 외로움에 시달리던 만 35세의 한 한국여성이 '외로워서 간다, 바보라고 욕 하지 마라.'는 짧은 유언을 남기고 권총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상담소 최초의 해외지부가 시카고 땅에 세워진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로 해외 지부 출범의 의의와 그 필연성을 극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81년 5월 이 소장이 시카고에 있는 미국변호사협회로 서한을 띄워 국제결혼 한 한국여성들의 사건을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 변호사들의 모집을 의뢰한 결과 한인변호사단을 비롯해서, 미국 전역에서 자원변호를 약속하는 잇단 서한과 서명이 답지하였다.

상담소의 기본적인 틀과 조직원칙을 그대로 옮겨다 만들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어지는 미국 지부는 한국에서처럼 원만한 부부생활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양강좌를 비롯하여 가정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도 차차 넓혀 가기로 했으며 동포들의 미국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 주기 위해 영어 교육을 비롯해서 미국 문화, 역사 등 이민생활 전반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의 지부설치 계획은 1982년 11월 13일 이 소장이 미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지역별로 하나씩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 첫 결실이 1983년 1월 시카고 지부의 탄생이었다.

시카고 지부의 출발은 1981년 6월 발족한 시카고 한인여성회(회장 홍정옥)를 모체로 이루어졌다. 2년여에 걸쳐 교민사회의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펴오던 한인여성회가 한인회관 내에 상담실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상담기관으로써 새 출발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1983년 1월 시카고 지부가 상담소의 해외지부 제1호로서 개소식을 가진 데 이어 1983년 중순부터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지부가 탄생했다. 이러한 지부설립운동은 5월 31일 이태영 소장의 제2차 미국 방문을 계기로 다시 가열되기 시작했는데, 6월 18일 상담소의 두 번째 해외 지부가 되는 덴버 지부(지부장 이난수)를 비롯하여 1983년 6~8월에 걸쳐 덴버, 콜럼버스, 오거스타, 킬린, 콜로라도스프링스,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 미국 내 7개 지역에서 잇달아 지부가 탄생했다.

이러한 지부설치 운동은 ‘한국인의 문제는 한국인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미국 사회에 떨치게 됨은 물론이고 재미 한인 사회에 모처럼 싹을 틔운 공동체 운동이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나의 1불이 번민하는 이웃을 돕는다.’는 기치 아래 한 사람이 한 달에 1달러씩을 내서 무료 상담소를 운영하자는 이 운동이 광대한 미대륙에 제각각 흩어져 사는 동포들을 한데 묶는 정신적 중심점의 역할까지도 성공리에 수행해 나갔기 때문이다.

지부설립운동이 공동체적 사업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지부가 세워질 때마다 업무와 시설 일체가 동포들의 직접 참여 혹은 후원에 힘입어 출발되는 사례로 설명할 수 있었다.

상담 일선에 나선 동포 자원봉사자들은 인력을 제공하는 외에 시설지원에도 적극성을 보여 한인교회, 한인회관 등에 상담실이 차려질 수 있도록 주선하는가 하면 서울의 상담소가 그랬듯이 현판 하나부터 책상, 파일박스, 타자기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용품 거의 모두를 정성 어린 기증품으로 마련하곤 하였다.

남가주 지부는 1983년 7월 19일 웨스턴 가에서 미용학교를 운영하는 박광현·비키 박 부부가 기증한 학교건물의 2층 방에서 시작했다.

우리 동포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을 둔 남가주 지부는 상담을 기본업무로 하되 취지문에서 약속한 대로 예방 프로그램에도 역점을 두어 9월 이후 월례 목요 강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갔다. 한미 양국의 가족법 중 동포사회의 관심이 쏠려 있는 내용과 꼭 알아두어야 할 관계법을 다루는 이 시간은 강좌가 열릴 때마다 한인신문 등의 보도를 통해 지상 중계될 만큼 호응이 높았다.

이후 남가주 지부가 보여준 급속한 성장은 1984년 2월 7



일 가진 정기 이사회에서 새해 주요사업으로 어머니학교 운영과 상담소 회보 발행 등 제2, 제3의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할 정도였다. 발족한 지 1년도 안 돼 남가주 지부는 상담소의 주요사업을 성공리에 이식, 미주 내 모범 지부로 자리매김하며 명실공히 '동포에 의한, 동포를 위한, 동포의 기관'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다.

1983년 한 해 동안 문을 열었던 이상의 8개 지부 외에 1985년 5월 5일, 워싱턴 디시도 종래의 후원·회원지부를 발전시켜, 직접 상담자와 만나는 상담지부로 새롭게 출발함으로써 상담소의 해외 지부는 1985년까지 모두 9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던 중 1986년 4월 12일 미국 필라델피아에 '필라 지부'가 개소하였다. 해외 지부 논의 4년 만에 결실을 본 필라델피아 지부는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에서 이태영 소장 및 동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을 열었는데, 이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규합하여 결성한 '필라한인여성회'가 필라 지부로 인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해외 지부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한인가정상담소, 가든 그로브의 한미가정상담소, 버지니아 비엔나의 워싱턴 가정법률상담소, 워싱턴 디시의 한인생활상담소, 필라델피아의 필라여성회 가정법률상담소, 뉴저지의 한인가정상담소 등으로 분화하여 독립적으로 발전적인 길을 꾸준히 걷고 있다.

### 지방상담소 개설 지원과 국내 지부 출범

상담소의 활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그 활동상이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됨에 따라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각 지방에서도 법에 의한 여성의 권리 보호 및 신장에 대한 인식이 한층 깊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확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지방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동안 서울에서의 상담활동 만으로는 도저히 전국에 골고루 법률구조의 혜택을 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 상담소는 우선 지방 대도시에 가정법률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상담소의 이태영 소장은 지방 대도시의

YWCA 등 여성단체의 크고 작은 행사에 초청될 때마다 여성운동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으로 당장이라도 착수할 수 있는 것이 불우한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 운영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지방의 여성지도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이 문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같은 비공식적인 활동과 병행하여 이 소장은 1966년부터 대한YWCA연합회 산하 각 지방 YWCA 프로그램부에 상담소를 설치할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러한 건의가 마침내 받아들여져 1967년 7월 24일 개최된 한국 YWCA 전국대회는 각 지구별로 상담소를 설치한다는 원칙으로 정식으로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서울의 상담소는 지방 상담소 설립에 필요한 제반 수속과 절차, 상담소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보내주고 설립과 운영의 준비 사항을 가르쳐 주었다. 이와 함께 상담소는 훈련된 실무자를 뽑아 보내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지방 상담소 측에서 상담위원 등 실무를 맡게 될 사람들을 서울 상담소로 파견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65년 대구상담소, 1966년 광주상담소, 1968년 부산상담소 등이 문을 열어 지역사회에서 법률구조 사업의 길을 열었다.

그 후 해외 지부 설치 사업이 시작되면서 1980년대 중반 국내 지부 설치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83년은 상담소 역사에서 지부확대의 한 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해 8월까지 해외에서 8개 지부가 문을 연데 이어 11월 8일 국내에서도 최초의 지부가 문을 열게 되었다. 즉 동네 단위 첫 상담 지부가 이 날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탄생하였던 것이다. 신당동 지부는 특히 상담소의 목요법률강좌 수료생들이 만든 첫 상담소였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부침이 있었으나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지부가 설치되어 지역사회에서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 왔다. 하지만 1987년 제정된 법률구조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2019년 12월 31일자로 기존의 본부와 지부 관계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법률구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편집부



### 상담을 통해

행위자는 지혜롭게 갈등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피해자는 행위자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어

서로 존중하며 화합해

사건번호 2018버5\*\*폭행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집단상담 8회,  
교육강좌 1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1회 등 총 16회 실시

#### 상담기간

2018. 6. 21. ~ 2018. 12. 27.

#### 상담경과

행위자는 이혼 후 2008년 피해자와 재혼하였다. 피해자는 15년 전 중국에서 이주해왔으며 영주권자이다.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행위자의 전혼자녀로 3남(33세, 25세, 21세)이 있다. 큰 아들은 조모(행위자의 새어머니)와 살고 있고, 막내아들은 행위자의 전처와 살다가 군 복무중이며, 둘째 아들만 행위자 부부와 살았다. 행위자는 2018년 2월 사건당일 둘째 아들에게 거부감을 가진 피해자와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10회 밀치는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근무하는 둘째아들은 사건 이후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게 되어 피해자와의 갈등요인이 해소되었고, 행위자와 피해자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하였다. 특히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현재 상황에서 취할 바는 피해자의 뜻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 아들과 일은 같이 하되 거주지를 분리함으로써 가족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점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잘해준다면 변화를 인정하였고, 행위자의 전혼자녀가 독립, 분가하여 갈등요인이 해소되었으므로 이대로만 지내면 될 것 같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이전의 부부관계도 10점 만점에 8점 정도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며 지금도 8점이라고 평가하였다. 모자라는 2점은 언어, 문화적인 환경차이에서 오는 부득이한 것이라고 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노력하는데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달라 쉽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피해자가 아들과 다툰 때 본인이 큰 소리를 냈는데 이제는 환경적으로 갈등요인이 해소되어 그럴 이유가 없고 앞으로도 잘 지낼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형편이 많이 나아진 점도 부부관계가 좋아진 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특별법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사건번호 2017버2\*\*\*상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음주문제상담 2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2회,  
음주문제상담 2회, 부부집단상담 1회

부부상담 5회, 부부집단상담 5회 등 총 23회 실시

**상담기간**

2018. 6. 28. ~ 2019. 1. 2.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사실혼관계로, 혼인기간은 15년이며 부부 사이에 1녀(14세)가 있다. 부부는 구청의 지원을 받아 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사업단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행위자는 2017년 11월 사건당일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결정주문에서 행위자를 피해자와 함께 상담위탁 하였는데 행위자 뿐 아니라 피해자도 상담일정에 성실하고 순응적인 태도로 임하였다.

부부는 평소에는 갈등이 거의 없는데 술을 마시면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아 갈등이 폭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부부는 사건 이후 2주일에 한번 정도로 음주횟수를 줄였고 음주량도 3~5잔 정도로 줄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상담자는 상담기간 중 계속 절주를 이행하도록 과제를 부과하였다. 부부 모두 절주를 실천하였고, 상담기간 중 음주문제나 그로 인한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다. 행위자는 싸울 때 그냥 참는 것 말고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상담을 통해 피해자는 행위자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행위자의 욕하는 행동 때문에 답답했는데 지금은 행위자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행위자가 이전보다 더 많이 참고, 피해자를 이해해주려는 것이 보이는 등 행위자의 행동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행위자는 여자가 남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피해자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부부집단상담 종결상담에서 젊은 구성원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으니 앞으로 재미있게 잘 살라’는 덕담도 하였다.

종결상담 시 가장 큰 변화로 행위자는 부부간 대화가 부드러워진 점을, 피해자는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서로 배우자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게 된 점을 꼽았다. 향후 실천 과제로 피해자는 웃는 노력을, 행위자는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을 갖겠다고 다짐하였다. 부부 모두 절주를 실천하고 있으며 향후 노력도 다짐하였다.

사건번호 2018버8\*\*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1회,  
음주문제상담 3회, 부부집단상담 1회,  
교육강좌 2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음주문제상담 3회, 부부집단상담 1회,  
교육강좌 2회

부부 부부집단상담 4회 등 총 23회 실시

**상담기간**

2018. 7. 5. ~ 2018. 12. 27.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사실혼 부부로, 혼인기간은 4년 5개월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행위자는 2018년 4



월 사건당일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여 소란을 피운다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초상담시 피해자는 갈등의 원인으로 자신의 술 문제를 꼽았지만 사건 이후 조심하고 있었고, 행위자는 피해자의 주사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력을 하였지만 이후 조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행위자는 주사는 하지 않지만 음주횟수가 잦아 부부 모두에게 음주문제가 있었다. 행위자는 음주횟수를 주 5회에서 3회로 줄이기로 상담자와 약속한 후 이를 실천하였다.

부부는 함께 상담에 임하였으며, 행위자는 상담을 통한 변화로 음주횟수를 줄이고 피해자를 많이 이해하게 된 점을 들었다. 어린 시절에 자신도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피해자의 상처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많이 보듬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변화는 이전보다 욕설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종결평가 시 행위자는 상담 이전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2~3점, 현재는 7점으로 평가하였고 모자라는 3점을 채우기 위하여 더욱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 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상담 이전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2점, 현재는 7점으로 평가하였고, 모자라는 3점을 채우기 위하여 행위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가사에 동참하기를 바랐다.

#### 사건번호 2018버4\*\*폭행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1회,  
집단상담 1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1회, 부부 부부집단상담 5회 등 총 17회 실시

#### 상담기간

2018. 9. 4. ~ 2019. 3. 11.

####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었다. 2018년 2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술을 마시고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귀가한 일을 문제 삼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고 욕하며 큰 소리를 질렀고, 이에 맞대응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함께 상담을 받도록 결정하였다.

행위자는 사건 이후 운동을 시작했고 절주를 하였으며 상담을 통하여 부부 상호간에 이해를 높이고 성격차이를 극복하게 되기를 바랐다. 피해자는 자신과 행위자가 감정 조절방법을 알게 되기를 바랐다. 초상담에서 폭력재발방지 및 부부관계 개선을 위하여 실천할 사항을 점검한 결과 행위자는 욕설과 큰소리를 지르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피해자는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평상심을 유지하고 일관된 감정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부부에게 타임아웃 및 비폭력대화법을 소개하고 비폭력 대화 실천을 당부하였다. 부부는 상담기간 중 서로 말을 조심하며 비폭력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부부는 부부집단상담에서 평소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사소한 갈등이 다툼이 되었으며, 서로의 성격을 바꾸려 하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많았고, 화가 날 때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 잘못을 지적하는 버릇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부부 모두에게 잘못을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지 않게 되었다. 부부집단상담 종결 회기에서 피해자는 행위자로부터 폭력행동에 대해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를 받았으며 눈물을 흘렸고 집단상담이 부부관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부부가 같이 상담을 받고, 상담을 마치고 집에 가면서 상담내용을 생각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부부관계에 적용해보려고 노력하였고, 특히 다른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해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이전보다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게 되었으며, 화를 잘 내지 않고 지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종결상담에서 피해자는 감정표현방법이 개선된 점을, 행

위자는 싸워도 이전과 달리 금방 풀어지게 된 점을 변화된 점으로 꼽았다. 현재 부부관계에 대하여 피해자는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모자라는 2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감정조절 노력을 다짐하였다. 행위자는 현재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7~8점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부부는 상담기간 중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 계획도 마련하였다. 상담이 준비된 부부, 부모가 되기 위한 전화위복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8버5\*특수폭행 / 2018버5\*폭행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8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4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4회,  
행위자 부부집단상담 5회 등 총 23회 실시

### 상담기간

2018. 9. 18. ~ 2019. 3. 19.

###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4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녀(3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1회 식기를 손괴하여 6개월간 보호관찰 및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아 본소에 위탁되었다. 폭력을 하게 된 사실관계를 보면 피해자가 잠자는 아이를 건들었거나, 깨웠거나, 시어머니에게 말 대답하였다는 등의 이유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한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부부 싸움이 아이에게 노출된 부분을 미안하게 생각하였지만, 피해자가 자기중심적인 성격이고 전반적인 가사능력이나 양육능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피해자의 노력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가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1년 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카드로 180~2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결제해주고 가사와 자녀양육은 함께 사는 어머니와 가사도우미가 하고 있었다.

행위자는 지금까지 관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하면서 피해자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자신도 적극적으로 응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집에 잘 들어오고, 소득활동을 하기 보다는 가사를 전담해주기를 바랐다. 상담 초기 행위자는 현재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상담이나 피해자와의 향후 관계 개선방안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다. 특히 피해자의 가사노동에 대해 불만을 가졌으며, 피해자가 스포츠 마사지사습을 하는 것도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육강좌, 개별상담 등을 거치면서 부부집단상담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 상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담약속을 정했지만 오지 않았고, 다시 부부집단상담 참여를 권유하여 1월 10일부터 6회기 예정으로 부부집단상담에 참여하기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였지만 피해자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고 행위자 혼자 참석하였다. 행위자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본래 대담을 대충하고 약속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더구나 이 부부는 부부간 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상담 참여를 권유하지 않아 행위자의 입장만 들을 수 있었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다만, 행위자는 아이가 초등학교생으로 어려서 엄마와 있기를 원하니 이혼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방관자로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삶의 목표는 오직 딸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상담자는 상담 종결 이후라도 부부상담을 받음으로써 아내의 입장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권유하였고 행위자는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였다. 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인식 개선의 효과로 갈등상황에서도 폭력이 재발되지 않은 점이 유의미하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Q ▶▶▶

30대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고, 둘 지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평상시에 집안일도 잘 돕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몇몇한 남편,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언과 욕설을 하고, 특히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그 정도가 심해져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온 남편이 큰 소리를 질러서 겨우 재운 딸이 깬습니다. 조용히 해달라고 했더니, 저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점점 심해져서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

평상시에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가장으로 책임감이 강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서 무척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분노상황에서 극단적으로 폭발하거나, 또는 술을 마셨다는 핑계로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혼자서만 고민하지 않고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신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상습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공권력이 개입되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폭력과 관련된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들이 교정되어 폭력적인 행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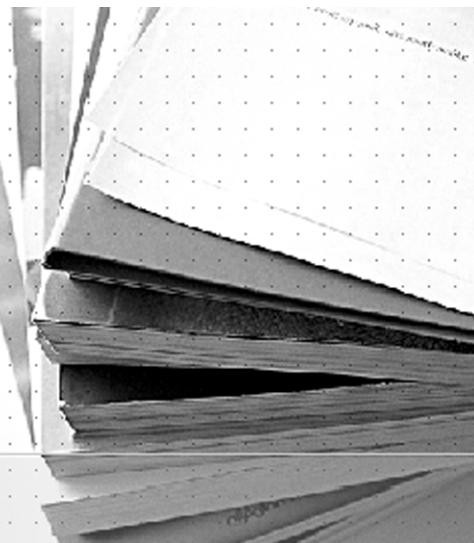
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 중 상담위탁 결정을 받게 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위탁기간 동안 상담을 받게 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신의 폭력행위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폭력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온 전문 상담위원들을 중심으로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학 교수, 심리상담가 등에 의해 개별상담 및 부부(가족)상담, 집단상담, 음주문제 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안전을 위해서 남편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개입에 의해 폭력이 중단되고 더 나아가 부부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상담소를 방문해주시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차연실 상담위원

## 좋은 책



내부순환로에서 여의도 방향 강변북로로 진입하기 위해 고가에 오르면 어느 때에는 황사와 미세먼지의 콜라보로 멀리 여의도의 고층 건물들이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일 때가 있다. '블레이드 러너'의 현실판일까, 중얼거리다 보면 필연적으로 영화의 원작인 필립 K.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자양을 꿈꾸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제목만으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도 드물다. 대체로 지금까지 본 SF소설이나 영화란 대개 이런 것들이어서 파괴와 압담함과 우울함이 겹쳐져 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책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우리나라 작가의 SF 소설로는 처음이었는데 그간 보아오거나 생각해 왔던 SF 소설이나 영화와는 많이 달랐다. 첫 번째 이야기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는 뛰어난 과학자 릴리 다우드나로 인해 '완벽한' 유전자의 선택이 가능해진 멀지 않은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시초지'라 알려진 그곳에서 완벽함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계 밖으로 밀려난다. 그리고 소설은 마치 유토피아처럼 장애도, 차별도, 혐오도 없는 그리고 사랑도 없는 행성인 '마을'을 배경으로 성년이 되면 순례를 떠나는 이들 중 일부는 돌아오지 않는 것에서 의문을 품는 화자에게서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혐오와 차별, 모순으로 가득 찬 세계를 분투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실은 외계성이었군요."라는 흥미진진한 대화가 오가는 「공생가설」은 '외계성'과 같은 낯선 단어와 예사롭지 않은 설정에도 불구하고 그지없이 따뜻하다.

성공과 실패, 주류와 비주류 혹은 정상과 비

정상 등 경계에 대해 환기시키고 의문을 던지는 김초엽의 이 소설집에는 저 미래에도 여전히 나이 많은 여자여서, 스펙이 떨어져서,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도외시 되는 소수자들의 모습이 눈물겹고, 그 와중에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어떤 연대감 같은 것들이 촘촘하게 그려진다. 무엇보다 표제적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여러 설정들 또한 무척 인상적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할머니 과학자'로 과학의 발전이 경제논리와 결합하면서 그녀가 가족과 생이별하고, 아득한 우주에서 재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 저 미래에도 이산가족이 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유프 항법'으로 우주 개척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딥프리즈는 인류의 우주 개척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었으며, 아무리 공간 왜곡을 통해서 성간 거리를 줄이더라도 ... 인류는 딥프리즈를 이용해 깊은 잠을 자면서 더 먼 별들 사이로 퍼져나갈 테고 하지만 고차원 원형 통로의 존재가 알려지면서와 같이 생소한 낱말들이 이어져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 밖에도 미래의 장례문화를 그려볼 수 있게 해 준 「관내분실」도 흥미롭고 그 사연은 구구절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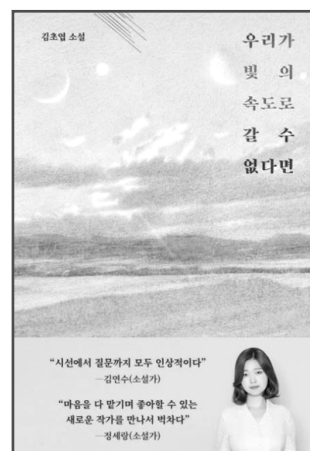
이런 작가들을 보면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음을 실감하면서 참 좋은 기분이 된다. 작가 김초엽은 1993년생으로 포스텍 화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생화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7년 「관내분실」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대상과 가작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 숙 현 편집부장

##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소설

하블, 2019



결혼과 인생 (203)

장차현실의 만화일기

91

# 새해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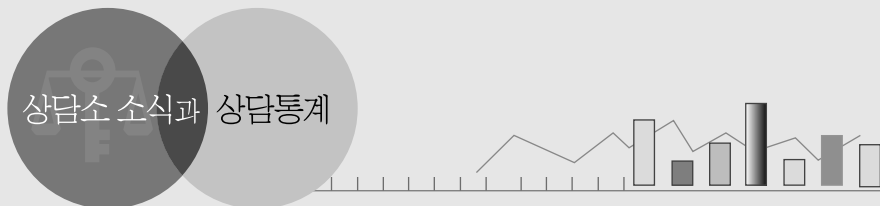


글 | 그림 | 장차현실



2020년 새해가 왔다.  
나 또 한 그런 불완전한 존재임을 상기하며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다짐해 본다.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 종무식 및 시무식

상담소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전 직원이 함께 한 해의 업무를 마감하는 종무식을 가졌고, 2020년 1월 2일에는 8층 대강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본소 광배희 소장은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고, 특히 시무식에서는 상담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을 생각하자는 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소통을 통해 서로 배려와 이해,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상담소 구성원으로서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내담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해에도 직원들 모두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완수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시무식에 참석한 상담소 전 직원들은 고 성내운 교수의 낭송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삼천만 동포에게 눈물로 고함”을 듣고 새해 업무를 시작하였다. (관련사진 2면)

### 이태영 선생님 21주기 맞아 국립현충원 참배

2019년 12월 17일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21주기를 맞아 상담소 직원들은 아침 회의 시간에 조출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광배희 소장 등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하며 창설자의 뜻을 기렸다. (관련사진 2면)

###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일일 ‘라오니 캠프’ 개최

본소에서는 2004년에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을 신설하여 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월례모임에서 확장한 캠프 일정을 추가하여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심리적 지지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라오니 모임’은 ‘즐거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힘들었던 부부관계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 평등한 부부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와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지난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라오니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상담소에 모인 가정폭력 피해여성 18명에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본소 소개 및 라오니 캠프의 취지를 전달하였고, 이어서 우애령 박사의 ‘나의 이해, 가족의 이해’라는 제목의 강의를 있었다.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는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며, 자신이 기분 나쁜 상황에서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아 비난하기 보다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want)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갈등해결방법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장소를 이동하여 뮤지컬 ‘보디가드’를 관람하였다. 문화체험을 통해 남편이나 자녀가 나의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내 스스로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 인생의 나의 몸과 마음을 지켜야겠다는 인생

의 메시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었다.

이어 저녁식사를 하면서 가진 평가회 시간에서 참가자들은 캠프를 통해 하루 종일 자신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에 충분히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며, 또한 참석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소에서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을 월 2회로 진행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역량강화에 힘쓰고,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 희망가정폭력상담센터 직원 및 교육생 대상 법률구조체험교육

본소에서는 지난 12월 18일 희망가정폭력상담센터의 가정폭력시설 종사자 양성 교육 교육생 및 직원들 25명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본소를 방문한 이들은 상담소의 법률구조 역사 및 가족법개정사와 관련한 영상 시청과 상담소 사진 전시실을 관람 한 후 강의를 들었다. 강의는 복미영 상담위원이 본소의 법률구조 사업 및 기관 연계 절차, 이혼 소송 관련 판례의 동향에 대해 진행하였고, 강의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 법률구조 사례, 소송 구조 절차 및 대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12월 19일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이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에서 ‘마음과 언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듣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는 마음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 설명하였고, 마음은 실체가 아니고 언어화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언어로 잘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내가 마음을 말로 잘 표현하지 않았음을 반성하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가족에게 더 많이 표현

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다음 강의는 오는 새해 1월 30일 (목) “결혼은 왜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12.4.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최수진 상담위원
- 12.10. 가정폭력예방연수-휘경여자고등학교  
교직원대상  
- 최수진 상담위원
- 12.10. 경기지역자활센터 실무자 사례회의  
- 복미영 상담위원
- 12.18. 특강 -  
가족법 및 법률구조사례-희망가정폭력상담센터  
- 복미영 상담위원
- 12.26. 가족법 및 신용회복 교육-강서지역자활센터  
- 조은경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2019년 12월 13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가족법학회 주최 동계학술대회에서 “현행 가족개념에 대한 고찰”에 관해 토론자로 발표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2019년 12월 3일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였고, 4일에는 경기도가족

여성연구원의 <경기도 젠더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중점 과제설정을 위한 전문가조사에 응하였다. 19일에는 서울권역 가정폭력상담소 정기회의에 참석하였고, 20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조은경 상담위원은 2019년 12월 17일 법무부 보호정책과 주최로 열린 민간 법문화진흥센터 실무자간담회에 참석했으며 이어 오후에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가 주최한 하반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박상진 상담위원은 2019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특수분야연수기관지정 교원직무연수 설명회에 참석했다.

유혜경 상담위원은 2019년 12월 4일 양육비이행관리원 현장 기동 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했다.

김미연 재무회계과 직원은 2019년 12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환수 설명회에, 12월 17일에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 곽배희 소장, 2020년 홍보 관련 회의 주관

곽배희 소장은 지난 12월 24일 상담소에서 본소의 홍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베리 모먼트와 2020년 상담소 홍보 전반에 관해 논의 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베리 모먼트 최성희 부사장과 윤종진 팀장이 참석하였고, 본소의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과 정상원 전산 담당자가 배석하였다.

## 2019년 12월 본부 상담통계

| 총상담 5,511    |           |      |    |    |
|--------------|-----------|------|----|----|
| 법률상담 (5,044) |           |      |    |    |
| 면접           | 전화        | 인터넷  | 순회 | 지상 |
| 934          | 4,001     | 103  | 3  | 3  |
| 화해조정         | 소장 등 서류작성 | 소송구조 |    |    |
| 381          | 66        | 20   |    |    |

\* 인터넷 정보 이용 56,017건

2019년 12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511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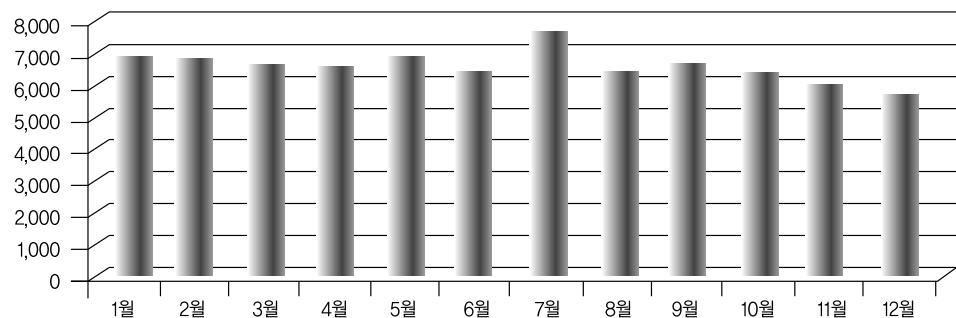
5,044건(91.5%), 화해조정 381건(6.9%), 소장 등 서류작성 66건(1.2%), 소송구조 20건(0.4%)이었다.

법률상담 5,044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9년 11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3%→0.4%), 부부갈등(3.2%→4.1%), 이혼(20.2%→21.1%), 사실혼해소(1.0%→1.1%), 위자료·재산분할(9.8%→10.9%), 가족관계등록부(3.7%→4.4%), 성년후견(2.6%→2.7%), 가사절차(7.1%→8.5%)에 관한 상담이 증

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0.2%→0.3%), 파산(2.5%→2.8%), 개인회생(0.4%→0.6%),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2%→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5,044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34건(18.5%), 전화상담 4,001건(79.3%), 인터넷상담 103건(2.0%), 순회상담 3건(0.1%), 지상상담 3건(0.1%) 순이었다.

2019년  
월별  
총 건수



## ● ● ● 고맙습니다

### 2019년 12월 자원봉사자

####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휘,  
이병주 님

####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소영, 강운영, 강종협, 김수경, 김수연, 김지원,  
김태주, 박수열, 이현정, 이혜민, 임방글 변호사 님

####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미옥,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데이비드 워터스, 사대진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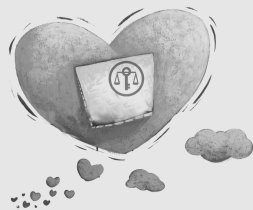
#### • 학생 자원봉사

강라연, 김경민1, 김경민2, 김동은, 김송희, 김수연, 김준성, 김지연,  
김지우, 나현수, 남은결, 문채현, 박범근, 박소연, 박수연, 박지원,  
박지윤, 배상준, 석재현, 성희연, 신유림, 엄윤서, 오정훈, 윤여영,  
이서희, 이수정, 이수지, 이승철, 이우현, 이현학, 임소연, 임지윤,  
조예림, 조은비, 진수연, 한봄이, 황인경 님  
국민대학교 법학과 사회봉사 - 노상혁, 한종선 님  
사법연수원생 자원봉사 - 이나리 님(제49기 사법연수원생)

### 후 원

####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박미라 님



####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 지부소식과 상담통계는 지부 체제가 유지되었던 2019년  
12월 내용까지 본소에 접수된 순서대로 게재합니다.

### 구리 · 남양주시지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 4회, 형사조정 8회를 실시  
하였다. 이정숙, 장경아, 김효경,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상  
담봉사를 하였다.

###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출장상담 40건을 실시하였다. 대구가  
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지원사업으로 부모교육(총 4  
회, 27쌍 부부)을 실시하였다. 전하은, 허노목, 임정, 장준  
범, 박태영, 이정훈, 이성관, 권중환, 엄요한, 이서준 변호  
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성남지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  
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에서 6회(24명), 광주지법원에  
서 3회(59명)를 실시하였고, 협의이혼의무상담으로 성남지  
원에서 상담 3회(13쌍 부부)를 실시하였다. 성남중앙도서  
관, 관내 동주민센터 등에 상담소 홍보물을 8회 배포하였  
다. 송지민, 이수연, 이유리, 이혜민, 임상준 변호사가 법률  
상담봉사를 하였다.

##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상담 4회, 가사조정 3회, 상담 3회를 실시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을 2회 실시하였다. 12월 5일 이사회를, 1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3일, 17일 LH 전주주거복지통합지원센터 출장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홍보를 실시하였다. 24일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시청 등에 가정상담지 등을 배포하였다. 박정교, 송진희, 박형윤, 서보람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중구지부

12월 17일 청구역에서 가정폭력 추방주간 유관기관 합동 가정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김창진, 장상현, 박은정, 이동진, 홍지혜, 황은하, 김영옥, 이효재, 심미숙, 여지은, 이수희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진주지부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 2019년 11월 지부 상담통계

| 구 분<br>지 부               | 총 건수 | 법률상담 | 법률구조  |              |      |
|--------------------------|------|------|-------|--------------|------|
|                          |      |      | 화해 조정 | 소장 등<br>서류작성 | 소송구조 |
| 강 릉<br>(033) 652-9555    | 168  | 167  | 1     |              |      |
| 구리·남양주<br>(031) 551-9976 | 154  | 25   | 129   |              |      |
| 군 산<br>(063) 442-1560    | 84   | 66   | 17    | 1            |      |
| 대 구<br>(053) 745-4501    | 765  | 619  | 146   |              |      |
| 대 전<br>(042) 520-5258    | 179  | 176  |       | 3            |      |
| 동 해<br>(033) 535-0188    | 126  | 126  |       |              |      |
| 목 포<br>(061) 273-2514    | 107  | 106  |       | 1            |      |
| 부 천<br>(032) 667-2314    | 324  | 219  | 105   |              |      |
| 성 남<br>(031) 707-6661    | 430  | 360  | 68    | 2            |      |
| 송 도<br>(032) 834-1369    | 132  | 26   | 102   | 4            |      |
| 수 원<br>(031) 243-4600    | 355  | 315  | 40    |              |      |
| 순 천<br>(061) 753-9910    | 170  | 165  | 5     |              |      |
| 안 동<br>(054) 856-4200    | 150  | 135  | 15    |              |      |
| 울 산<br>(052) 246-9568    | 87   | 82   | 5     |              |      |

| 구 분<br>지 부              | 총 건수  | 법률상담  | 법률구조  |              |      |
|-------------------------|-------|-------|-------|--------------|------|
|                         |       |       | 화해 조정 | 소장 등<br>서류작성 | 소송구조 |
| 익 산<br>(063) 851-5113   | 274   | 273   |       |              | 1    |
| 인 천<br>(032) 865-1120   | 230   | 69    | 160   | 1            |      |
| 전 주<br>(063) 244-2930   | 231   | 231   |       |              |      |
| 정 읍<br>(063) 535-3705   | 165   | 163   | 2     |              |      |
| 제 천<br>(043) 644-5690   | 68    | 68    |       |              |      |
| 중 구<br>(02) 2238-6554   | 341   | 341   |       |              |      |
| 진 주<br>(055) 746-7975   | 145   | 104   | 39    |              | 2    |
| 창원·마산<br>(055) 261-0280 | 308   | 293   | 14    | 1            |      |
| 청 주<br>(043) 257-0088   | 188   | 97    | 87    | 4            |      |
| 춘 천<br>(033) 257-4688   | 142   | 142   |       |              |      |
| 태 백<br>(033) 554-4004   | 96    | 96    |       |              |      |
| 평택·안성<br>(031) 611-4251 | 170   | 142   | 24    | 3            | 1    |
| 포 향<br>(054) 283-7555   | 42    | 42    |       |              |      |
| 지부총상담                   | 5,631 | 4,648 | 959   | 20           | 4    |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 외도 후 집을 나가 상간남과 동거하고 있는 아내와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19-74

담당 : 김영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남, 49세)와 피고(여, 51세)는 2004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5세)을 두고 있다. 혼인 후 피고는 구치소에 갈 위기에 처했다며 원고에게 세 차례나 벌금 대납을 요구하였다. 어느 날 원고는 피고가 친구와 다툼 광명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원고는 경찰서에서 피고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종용했지만 피고는 끝내 그만두지 않았다. 2008년경 피고는 외도를 하더니 집을 나가 현재까지 상간남과 함께 생활하며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전주지방법원 2019. 10. 2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1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9브○○ 사전처분 사건의 항고를 취하하고,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9즈기△△ 사전처분 사건에 관한 피고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신청을 하지 않는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233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7세)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14세부터 공장, 인쇄소 등에서 일하며 생계유지에 힘썼다. 성인이 된 이후, 신청인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은 신청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하였다. 생활비가 필요했던 신청인은 지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선뜻 내주었는데 알고 보니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었다. 신청인은 경찰서에 명의도용으로 신고하였지만 조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그렇게 신용불량자가 된 신청인은 노숙자쉼터를 전전하며 자활근로를 하였으나 소득이 약 70만원에 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오랫동안 만성C형간염을 앓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라는 신분 때문에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워 일용근로나 자활근로를 전전하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으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신청인은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1억 7천만 원을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

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12.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 건강악화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285

담당 : 전병규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36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부모님이 운영하던 주유소가 적자로 경매로 넘어가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 신청인의 아버지는 이 충격으로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조현정동장애를 앓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웠고 병원비는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결국 병원비를 비롯한 생활비가 부족한 신청인은 2017년경부터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하였고 채무돌려막기까지 이어졌다. 신청인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다니며 정신과적 상담을 받고 있다. 또한 어머니마저 신용불량자로 소득이 없어 친척의 집에서 무상거주하며 도움을 받고 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채무가 증대된 신청인은 아직까지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5,0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다. 이에 신청인은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12. 13.)  
채무자를 면책한다.

### 친생추정으로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 해야 하는 것을 친생부인허가로 바로 잡음

법률구조 2019-378

담당 : 안준형 변호사

사건명 : 친생부인허가

**내용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母)이고,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딸로 2019. 6. 출생한 사람입니다. 청구인은 사건 외 ○○○와 2013. 9. 혼인하여 2019. 3. 이혼하였기 때문에 사건본인은 민법 제844조 제3항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해당하여, 사건 외 ○○○의 친생자로 법률상 추정을 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은 ○○○의 유전적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의 허가심판 청구를 통해 사건본인과 ○○○ 사이의 법률상 친생 추정을 부인 받은 후에야, 비로소 사건본인의 부(父)를 그 실체에 맞게 정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2019. 7. 15.자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 10. 15. 수검명령이 내려져 유전자 검사가 이뤄졌으며, 2019. 11. 7.자로 친생부인의 허가가 최종 인용되었습니다. 현재 청구인은 위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근거로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친생부인의 소 및 심판 청구의 문제점은, 이 사건과 같이 사건본인의 ‘유전적 친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만약 법률상 친부로 추정되는 전남편이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친생부인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법원에서 수검명령이 내려지기는 하지만 사실상 가정법원에서 이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본 사건은 청구인의 전남편이 유전자 검사에 원만히 협조하여 큰 문제 없이 인용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향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11. 7.)

청구인의 사건본인과 청구 외 ○○○의 친생부인을 허가한다.

•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안준형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 생활법률강좌

###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 · 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 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 및 학부모 · 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 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일시 : 연중 (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 ·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1박2일 자녀동반 캠프

- 일시 : 2020년 5월 / 8월 / 9월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  삼성생명 )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2월 10일, 2월 24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 등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행 : 황순찬 (사회복지학 박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 ▶ 일정 및 강의제목

| 일시      | 강의제목                            |
|---------|---------------------------------|
| 2월 13일  |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
| 3월 12일  |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 및 충동조절 장애 |
| 4월 9일   |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
| 5월 14일  |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불안 및 공황장애           |
| 6월 11일  | 현실을 왜곡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망상장애          |
| 7월 9일   | 가정을 무너뜨리는 중독문제                  |
| 9월 10일  | 시간을 넘어서 고통을 지속시키는 트라우마 관련 장애    |
| 10월 8일  |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 정신증(조현병과 조울병)    |
| 11월 12일 | 몸이 기억하는 고통, 신체 및 수면장애           |
| 12월 10일 | 건강한 삶의 근원을 만드는 아동기 정신건강         |

## 2020년 2월 교육부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가족 · 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0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
- ▶ 강의 일정 및 주제

| 일시         | 강의제목                       |
|------------|----------------------------|
| 1월 30일(목)  | 결혼은 왜 해야 하나?               |
| 2월 27일(목)  |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사회적 차이       |
| 3월 26일(목)  | 사랑의 과학                     |
| 4월 23일(목)  | 신경과학과 정신분석의 관점에서의 분노       |
| 5월 28일(목)  | 부부갈등이 만들어지는 경로             |
| 6월 25일(목)  | 외도                         |
| 7월 23일(목)  | 어린 시절의 경험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   |
| 9월 24일(목)  | 갈등을 일으키는 성격과 가치관           |
| 10월 22일(목) | 갈등이 해결 되어 질 때 볼 수 있는 관계 양상 |
| 11월 26일(목) |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      |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경자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엄동설한에도 두터운 얼음장 아래에는 냇물이 흐르고  
꽃나무는 봄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합니다.

2020년 창립 64주년의 해를 맞이하는 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  
법률복지를 실현하며,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으로써  
급변하는 사회에서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복리를 지킨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해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상담소의 이러한 역사는  
언제나 따뜻한 성원으로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격려와 기대가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상담소는 법률구조 사업의 선구자답게  
변함없이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상담소와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리며  
평안과 건강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기원합니다.

2020년 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직원 일동

이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사이버상담을 이용하세요.



<http://lawhome.or.kr/m>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http://www.lawhome.or.kr)